

2018학년도 제5차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간 사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16:30
- 장소 : 본교 회의실

- 회순
 - ▶ 제5차 운영위원회
- 안건자문
 1.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
 4.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보고사항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간사(○○○): 12명의 위원 중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갑자기 폭염으로 인해 날씨가 상당히 더워져 탄력적으로 교실 에어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에어컨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폭염에 더위 조심하시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중략)
- 위원장(○○○):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모두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음악부장(○○○): 음악과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연구부장(○○○): 일반학과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1. 음악과 여름방학 방과후 교육활동비

가. 여름방학 음악캠프 계획안(한국음악전공)

- 1) 수업기간 : 2018. 7. 23(월) ~ 7. 27(금), 2018. 8. 6(월) ~ 8. 10(금)
- 2) 대상 : 음악과 한국음악전공 1,2학년
- 3) 개설과목 : 정악합주, 국악관현악
- 4) 1인당 수업비 : 123,750원

구분	학생수	총시수	금액	비고
박진숙선생님 (정악합주)	16명	20시간	61,875원	
김종욱선생님 (국악관현악)	16명	20시간	61,875원	
합 계			123,750원	

*산출내역 : 45,000원 * 총시수 * 1.10(관리비) / 학생수

나. 음악과 성악전공 3학년 학생 대상 대입전공실기수업

- 1) 수업기간 : 2017. 8. 6(월) ~ 8. 7(화)
- 2) 대상 : 음악과 성악전공 3학년 희망자
- 3) 1인당 수업비 : 79,200원

구분	학생수	총시수	금액	비고
박희림	20명	8	19,800원	
장혜지		4	9,900원	
황혜재		4	9,900원	
손가슬		8	19,800원	
황혜란		8	19,800원	
합 계			79,200원	

*산출내역 : 45,000원 * 총시수 * 1.10(관리비) / 학생수

2. 일반학과 여름방학 방과후 교육활동비

- 1. 대상 : 3학년, 2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
접수기간 7월 9일 ~ 7월 12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2. 과목 : 수학, 사탐(한국지리)
- 3. 수업 기간 및 요일 : 수학 7월 23일(월)~7월 27일(금), 한국지리 8월 6일(월)~8월 10일(금)
- 4. 강좌별 담당교사, 시간표 및 수업장소

연 번	학 년	영역	강좌명	수업일 및 시간	시수	교사	신청자수	1인당 수강비(원)
1	2	수학	AURA수학 미적분 특강	7/23(월)~7/27(금) 13:30-16:00 (일3시간)	15	○○○	6	120,300원
2	3	사탐	수능 한국지리 기출 분석	8/6(월)~8/10(금) 9:00-10:40 (일2시간)	10	○○○	12	40,100원

- * 수학 산출방법 45,000원 X 1.07(관리비 7%포함) X 15시간=722,250원/인원수=1인당 부담 금액
- * 사탐 산출방법 45,000원 X 1.07(관리비 7%포함) X 10시간=481,500원/인원수=1인당 부담 금액
- * 인원에 따라 금액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5. 수업교재 : 사탐 - 별도 유인물, 수학 - 미래엔 교과서 미적분1, 마플 수능기출 총정리 미적분1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	------------	------------

-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1. 주요내용

가. 신설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의 목적 조항 명시 2)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 및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명시 3)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교내 재심의 절차 및 방법 명시 4)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투 착용 허용 여부 5) 교복 이 교정식 명찰이 아닌 호주머니식 또는 탈부착식 명찰로 규정 6) 여학생의 바지와 치마 교복 선택권 보장 7)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지 여부 8)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의 명시 9)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 규정 여부 10)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중 학생의 수가 위원회 1/3 이상 되도록 구성됐는지 여부 1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중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방법이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나. 삭제 규정
학생자치회 소집 및 개최시 학교장 승인제도 폐지 여부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 학생선도규정 1조	<p>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와 본교 학칙 제 35, 36, 37, 38조에 의거 학생 포상과 학생 선도를 통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p>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p>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간서명란			

현 행	개 정 안
1. 학생선도규정 21조 4항	<p>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나.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가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p>
1. 학생선도규정 33조 1항	이한결(학생자치회 임원)
1. 학생선도규정 36조 5항	5항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신설)
2. 학생생활지도	<p>1)교육활동 및 기본 생활</p> <p>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p> <p>⑤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⑥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⑦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⑨학교는 제8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⑩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현행	개정안
2. 학생생활지도	<p>①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밀 보장 및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p> <p>②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③학생 생활지도 시 학생 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는 반드시 교사가 진행해야 한다.(신설)</p>
2. 학생생활지도 3) 복장	<p>아. 동복은 왼쪽 윗주머니 위에 명찰을 부착하여, 교외에서는 윗주머니에 명찰을 넣어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p> <p>차. 여학생의 바지 착용을 허용한다.(단, 바지는 학생 교복규정에 맞게 착용해야한다.)(신설)</p> <p>카. 동절기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단, 교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후 착용한다.)(신설)</p>
2. 학생생활지도 7) 정보통신규정	<p>③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가.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p> <p>나.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신설)</p>
3. 학생자치회회칙 제 9 조 (임원 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p>제 9 조 (임원 선출 및 자격)</p> <p>1.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삭제)</p>
3. 학생자치회회칙 제 14 조 (회의)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일일 전에 간사(학생회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제 14 조 (회의)</p> <p>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일일 전에 간사(학생회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삭제)</p>
3. 학생자치회회칙 제 18 조 (회의) 1. 학생자치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3.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이상 학급회 시간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학급 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학급회 의결은 학급인원 4/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p>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간서명란			

현 행	개 정 안
3. 학생자치회회칙 제 20 조 (임원의 선출) 2. 각 부의 차장은 각 부의 부장이 추천일 기준 1학년 재학생 중 적임자를 지도위원회에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출) 2. 각 부의 차장은 각 부의 부장이 추천일 기준 1학년 재학생 중 적임자를 지도위원회에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삭제) 2. 학생자치회의 각 부의 부장, 차장과 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신설)

- 위원장(○○○): 세 번째 안건은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부장(○○○):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 ▣

▣ 부교재 선정

교과	학년	교과명	담당교사	부교재명	출판사	가격	선정이유	
국어	2	미술 무용 연영	독서와 문법	○○○ ○○○	▶순쉬운 고전문학	미래엔	12,500원	국어 교육과정 운영 중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나, 교과서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성취수준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교재를 선정함. (2학년 - EBS교재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전작품이 운문/산문별로 시대순으로 수록된 작품을 EBS교재내에서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출판사의 책을 고르게 되었음. <미래엔 순쉬운 고전문학>은 가장 기본이 되어 꼭 알아야하는 필수 작품이 시대순으로 충실히 실려 있어 다른 출판사의 책보다 훨씬 구성이 좋다고 판단해 선정하게 되었음.)
		음악	고전					
	3	미술 무용 연영	문학	○○○ ○○○	▶수능 완성 국어	EBS	9,000원	
		음악	화법과 작문					
영어	1	영어	○○○ ○○○	▶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2	EBS	7,200	영어 교육과정 운영 중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나, 교과서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성취수준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교재를 선정함.	
	2	영어II	○○○ ○○○ ○○○	▶Reading Power- 주제별 독해II	EBS	9,500		
	3	심화영어독해I	○○○ ○○○	▶ EBS 수능완성 영어	EBS	9,700		

* 각 교과별 교과협의를 통해 부교재를 선정하였고 협의록은 연구부에서 따로 보관함.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위원장(○○○): 네 번째 안건은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 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 ▣

1. 주요내용

가. 졸업앨범 규격

- 규격 : 일반형(250mm*315mm)/중급
- 표지 : 일반형PU레이저2단, 철제밴드, 철제교표
- 면수 : 95면(표지불포함)

나. 부수 : 318부 (현재 3학년 학생수 기준)

다. 졸업앨범비 단가 : 44,600원

구 분	졸업앨범 단가			산출 근거
	2017학년	2018학년	차액	
금 액	44,040원	44,600원	560원 인상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조달단가 산출내역서 근거 -2017학년부터 앨범 부수가 줄어듦.

- 위원장(○○○): 다섯 번째 안건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회의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벽강예술관, 실용음악 녹음실 등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다.(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실용음악 녹음실 녹음뿐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 한가요?
- 행정실장(○○○): 설계 당시 녹음실로 설계를 되었기에 현재로써는 동영상 촬영은 불가능 합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모두 동의 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1. 주요 규정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안)
제2조[범위] 예술관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공연장 2. 분장실 3. 전시실	제2조[정의] ① 계원예술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 이라 한다)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부수된 기계·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1. 벽강예술관(부수 무대기계·설비·조명·음향 등 포함) 2. 체육관 3. 실용음악 녹음실 4. 기타 학교시설(운동장 포함) ② “시설의 사용” 이라 제1항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행위를 말한다.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현행	개정(안)
제4조[사용료 산정] 사용료는 예술관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별첨과 같이 정한다. 단, 본교 부설 계원 예술학교의 예술관 산정은 쌍방향의 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산정 등] ①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별표 2호와 같이 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통보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본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신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사용료(기계·장비 포함)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50% 감면 2.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단체에는 50% 감면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0% 감면

2 벽강예술관 사용료 신설 및 변경

가. 벽강예술관 사용료 변경

구분	항목	음악, 무용 (클래식, 재즈, 국악/ 무대설치 없는 공연)		연극,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기타 공연 (무대설치 공연 등)		비고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외부인	기본대관료 (5시간)	1,000,000원	1,25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 부대비용 별도 * 1일 1회 사용기준 * 공연시작 가능 시간 - 평일 17:00~19:00 - 토요일 13:00~19:00 * 공휴일 대관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협의하여야 함.
교·강사	기본대관료 (5시간)	600,000원	750,000원	750,000원	900,000원	
재학생 및 졸업생	기본대관료 (5시간)	500,000원	625,000원	625,000원	750,000원	
연습대관료	1시간당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나. 벽강예술관 부대비용 변경

구분	항목	품목	사용료		비고
			변경(전)	변경(후)	
부대 비용	음향	녹음(MP3)	20,000원	좌동	녹음 편집시 50,000원
	음향	합창용 마이크	-	80,000원	4개 기준(1 Set)
	조명	LED Moving Light	-	20,000원	
	조명	SPOT Moving Light	-	20,000원	

다. 실용음악

구분		항목	사용료	비고
외부인	1프로		200,000원	● 1프로(3시간30분) 기준 ● 녹음 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 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협의 하여야 함
교·강사 및 졸업생	1프로		100,000원	
재학생	1프로		50,000원	
시간초과 사용료		1시간당 기준 시간 1/3만큼 계산함.(백원단위 절사)		
구분	항목	비용	비고	
부대 시설(비용)	그랜드피아노	50,000원		
	엔지니어비	50,000원	● 1프로 당 금액 ● 재학생은 포함되지 않음	
	조율비	별도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라.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00,000	150,000	200,000	
운동장	20,000	40,000	60,000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에 계원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계원예술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부수된 기계·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1. 벽강 예술관(부수 무대기계·설비·조명·음향 등 포함)
2. 체육관
3. 실용음악 녹음실
4. 기타 학교시설(운동장 포함)

② “시설의 사용”이라 제1항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총괄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표 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흡연 및 음식물 반입금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4항 제6항에 규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운동장 등 모든 구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교의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건물내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7조 【사용 시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호**와 같이 사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산정 등】 ①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별표 1호**와 같이 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통보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본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사용료(기계·장비 포함)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50% 감면
2.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단체에는 50% 감면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0% 감면

제10조 【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닐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닐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 위원장(○○○): 이상으로 5건의 안건 심의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건의사항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이상으로 제5차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 12명

- 학부모위원 : ○○○, ○○○, ○○○, ○○○, ○○ ○○○
- 교원위원 : ○○○, ○○○, ○○○, ○○○
- 지역위원 : ○○○, ○○○

- 참석교직원: 행정실장 ○○○, 교감 ○○○, 음악부장 ○○○, 연구부장 ○○○
학생부장 ○○○, 교사 ○○○

기록자 : 간사 ○ ○ ○ (인)

간서명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2018학년도 제5차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간사	위원장	학교장

- 개최일시 : 2018. 7. 19.(목) 16:30
- 개최장소 : 회의실
- 참석인원 : 12/12 (참석수/정수)

- ▶ 제5차 운영위원회
 - 1.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
 - 4.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
 - 5.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보고사항
“ 해당 없음 ”
- 기타사항

● 안건자문

- 1.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음악부장 ○○○, 연구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
-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학생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 3. 부교재 선정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연구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부교재 선정
- 4. 3학년 졸업앨범 계약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교사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3학년 졸업앨범 계약
- 5.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보고사항
“ 해당 없음 ”

▶ 회의록 첨부

위의 자문 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간사 : ○ ○ ○ (인)